

#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712 |
|----------|------|

2026년 6월 2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 : 2026년 5월 26일  
다. 회부일 : 2026년 5월 27일  
라. 상정일 :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6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평생교육국장 정진우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음악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청소년 및 음악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음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관리·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,
- 음악과 관련된 창의적 창작 활동 및 진로직업 탐색, 학교연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.
- 또한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및 음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 교육·체험·창작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 음악 교육 및 창작 활동 동향 및 정책 연구
-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자산 및 시설의 관리·운영
- 그 밖에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57
- 개관일자 : 2023. 5. 20.
- 시설규모 : 대지 1,936m<sup>2</sup> / 연면적 5,422m<sup>2</sup>
- 주요시설 : 공연장, 개인연주실, 합주실, 댄스·뮤지컬스퀘어, 합창실, 편집실, 녹음스튜디오, 영상스튜디오, 청소년 아지트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-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7.1.1. ~ 2029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 - 소요예산 : 2,328백만원('26년)
  - 산출근거
    - 인건비 1,236백만원, 운영비 274백만원, 사업비 749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69백만원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동의안은 ‘(학)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음악센터(이하 ‘청소년음악센터’)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, 향후 3년간(2027.1.1.~2029.12.31.)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·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# 〈 ‘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’의 개요 〉

- **위탁사무명** :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관리·운영
- **위탁사무**
  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 교육·체험·창작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 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
  - 청소년 음악 교육 및 창작 활동 동향 및 정책 연구
  -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자산 및 시설의 관리·운영
  - 그 밖에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- **소재지** :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57
- **시설규모** : 부지 1,936㎡ / 연면적 5,422㎡
- **개관일자** : 2023. 5. 20.
- **주요시설** : 공연장, 개인연주실, 합주실, 댄스·뮤지컬스퀘어, 합창실, 편집실, 녹음스튜디오, 영상스튜디오, 청소년 아지트 등
- **위탁기간** : 3년(2027.1.1. ~ 2029.12.31.)
- **수탁자 선정방식** : 공개모집
- **소요예산** : 2,328백만원(2026년)
  - 산출근거 : 인건비 1,236백만원, 운영비 274백만원, 사업비 749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69백만원
- **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** : 적정

- 평생교육국은 음악과 관련된 창의적 창작 활동 및 진로직업 탐색, 학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, 음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- 청소년음악센터(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)는 2023년 개관하였고,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였던 2022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(이하 '서경대학교')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부지 1,936㎡, 연면적 5,422㎡(지하1층, 지상6층), 현원 23명(정규직 12명, 계약직 11명, 2026.5.31. 기준)의 직원이 23억 2천 8백만원(2026년)의 예산으로 12개 분야, 5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
**〈 청소년음악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〉**

| 구분    |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| 수탁기관          | 선정방법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최초위탁  | 3년 ('22.1.1.~'24.12.31.) | 학)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 | 공개모집 |
| 2차 위탁 | 2년 ('25.1.1.~'26.12.31.) | 학)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 | 재계약  |

**〈 청소년음악센터의 정현원 현황 〉**

(단위 : 명, 2026.5.31. 기준)

| 구분 | 총계 | 정규직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비정규직 |    |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|
|    |    | 소계 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기능 | 고용 | 소계   | 계약 | 기타<br>(혹탁직) |
| 정원 | 23 | 23  | 1  | -  | 2  | 8  | 12 | -  | -  | -  | -  | -    | -  | -           |
| 현원 | 23 | 12  | 1  | -  | 1  | -  | 3  | 5  | 1  | 1  | -  | 11   | 11 | -           |

### 〈 청소년음악센터의 사업구성 〉

| 연번 | 분야     | 주요 사업 내용   | 계획    |
|----|--------|--|-------|
|    | 총계     | 12개 분야, 58개 사업   |       |
| 1  | 문화예술교육 | 예술 인문학 콘서트, 스쿨오브뮤직, 월드뮤직클래스, 청소년댄스활동지원, 뮤지컬아카데미, 사운드스퀘어 등      | 9개 사업 |
| 2  | 음악 창제작 | AI 영화음악 제작, AI 뮤직 메이커스, 청소년 작사워크숍, 탭탭, 소리공장, 사운드패밀리, K-POP체험교실 | 7개 사업 |
| 3  | 공연제작   | SYMC 마스터클래스, 온앤온스테이지, 우리동네예술인지원 사업FAN, 드로우657                  | 4개 사업 |
| 4  | 전용공간   | 뮤니버스, 작은음악회, 소리지음문화예술로, 백스테이지투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개 사업 |
| 5  | 페스티벌   | 서울청소년댄스페스티벌, 댄스배틀대회, 서울청소년뮤직 페스티벌, Sori-파이, 청소년오케스트라페스티벌       | 5개 사업 |
| 6  | ESG    | 사운드익스프레스, 아카펠라, 환경소리탐험단, 글로벌 스테이지, 악기나눔, 소리지음 음악학교             | 6개 사업 |
| 7  | 음악진로   | 지역사회연계-오아시스, 청소년지역문화-이음로, 소리찾음, 소리잡(JOB)음, 소리씨앗, 예술아이          | 6개 사업 |
| 8  | 홍보     | 소리지음 기관홍보, 소리지음 소식지, 소리지음홍보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 사업 |
| 9  | 성장지원   | 청소년운영위원회, 소리지음활동단 연합활동, 청소년공연 동아리연합회,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등             | 9개 사업 |
| 10 | 공모사업   | 우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  | 1개 사업 |
| 11 | 기타사업   | 문화이음-오늘아고마워, 서울런-소리지음캠퍼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개 사업 |
| 12 | 민간위탁   | 청소년동행캠프  | 1개 사업 |

### 〈 청소년음악센터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〉

(단위: 천원, %)

| 구분       | 예산과목  | 2026년     | 구성비율      | 2027년(안)  | 구성비율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세입<br>예산 | 계     | 2,328,215 | 100%      | 2,376,333 | 100%      |       |
|          | 위탁금   | 민간위탁금     | 1,946,965 | 83.6%     | 1,995,083 | 84.0% |
|          |       | 민간위탁사업비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보조금   | 보조금       | 8,875     | 0.4%      | 8,875     | 0.4%  |
|          |       | 국비보조금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      | 시비보조금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      | 구비보조금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사업수입  | 시설이용료 수입  | 22,000    | 0.9%      | 22,000    | 0.9%  |
|          |       | 사업별수입     | 285,275   | 12.3%     | 285,275   | 12.0% |
|          | 사업외수입 | 법인전입금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      | 이월금       | 60,235    | 2.6%      | 60,235    | 2.5%  |
|          |       | 기타수입      | 4,360     | 0.2%      | 4,360     | 0.2%  |
|          |       | 지난년도 수입   | 505       | 0.0%      | 505       | 0.0%  |

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세출<br>예산 | 계      | 2,328,215 | 100%  | 2,376,333 | 100%  |
|          | 인건비    | 1,235,829 | 53.1% | 1,279,083 | 53.8% |
|          | 운영비    | 274,507   | 11.8% | 279,371   | 11.8% |
|          | 사업비    | 749,159   | 32.2% | 749,159   | 31.5% |
|          | 사업외지출  | 3,860     | 0.2%  | 3,860     | 0.2%  |
|          | 예비비   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지난년도지출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반환금    | 61,240    | 2.6%  | 61,240    | 2.6%  |
|          | 일반관리비  | 1,620     | 0.1%  | 1,620     | 0.1%  |
|          | 이윤    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   | -     |
|          | 부가가치세  | 2,000     | 0.1%  | 2,000     | 0.1%  |

-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9월에 평가한 내용으로,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청소년음악센터를 걱정하게 살펴보고,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# 〈 청소년음악센터 운영평가 〉

#### □ 운영평가 개요

- 수행기관 : 서울시(청소년정책과) 및 전문조사기관[한국정보경영평가(주)]
- 평가기간 : 2024년도(실시기간 2025.3.~9.)
- 평가범위 :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※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
- 평가결과 : 86.34점(100점 만점)

-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(2024.1.~12. 성과) 결과 연장근로 문제 해결 및 적정 근로시간 준수 등 관리 체계 개선,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등 예산 집행 효율 제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는바,
  - 센터 직원들의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<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>**

- 다수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장근로 문제 해결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, 적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필요
- 연간 예산 집행률은 90%를 초과하여 양호하나 분기별 집행률 편차가 크므로, 집행 추이를 반영한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

- 청소년음악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·점검 결과는 인사위원회 구성 미흡, 퇴직적립금 과소불입, 업무추진비 집행 미흡, 재물조사 결과 보고 누락,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,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'청소년시설 운영 전문성'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는 상황으로,
  -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**< 최근 3년간 지도·점검 결과 >**

| 연 도   |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조치결과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2023년 | 인사위원회 구성 미흡 (외부위원 1/2 이상) | 조치 완료 |
|       | 퇴직적립금(DC형) 과소불입           | 조치 완료 |
| 2024년 | 업무추진비 집행 미흡               | 조치 완료 |
|       | 재물조사 결과 서울시 제출 누락         | 조치 완료 |
| 2025년 |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미흡 (홈페이지 공개)  | 조치 완료 |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71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음악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나. 청소년 및 음악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음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## ○ 추진의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,
- 음악과 관련된 창의적 창작 활동 및 진로직업 탐색, 학교연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.
- 또한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및 음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 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 교육·체험·창작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 음악 교육 및 창작 활동 동향 및 정책 연구
-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자산 및 시설의 관리·운영
- 그 밖에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57
- 개관일자 : 2023. 5. 20.
- 시설규모 : 대지 1,936m<sup>2</sup> / 연면적 5,422m<sup>2</sup>
- 주요시설 : 공연장, 개인연주실, 합주실, 댄스·뮤지컬스퀘어, 합창실, 편집실, 녹음스튜디오, 영상스튜디오, 청소년 아지트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7.1.1. ~ 2029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,328백만원('26년)
- 산출근거
  - 인건비 1,236백만원, 운영비 274백만원, 사업비 749백만원, 사업외지출및기타 6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 2. 위탁기간
 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경림 (☎02-2133-4117)